

연명의료 관련 시범사업 설명회 자료집

2017. 9

프로그래

시 간	내 용
15:00~15:05 (5분)	안 내
15:05~15:50 (45분)	시범사업 설명 백수진(국가생명윤리정책연구원 연구부장)
15:50~16:00 (10분)	휴 식
16:00~16:40 (40분)	질문 및 응답
16:40	폐 회

목 차

I. 연명의료결정법 시행 추진 현황	1
1. 추진배경	1
2. 입법 추진 경과	2
3. 연명의료결정법 주요내용	3
4. 향후 추진계획	5
II. 연명의료결정법 시범사업 추진계획	6
1. 추진배경	6
2. 사업1: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상담·작성·등록	6
3. 사업2: 연명의료계획서 작성 및 이행	8
4. 공통 행정사항	14
III. 연명의료결정법 시범사업 기관 선정계획	15
1. 추진절차	15
2. 제출서류 및 제출방법	15
3. 평가기준 및 평가방법	16
4. 추진일정	16
【붙임1】 시범사업 참여 신청서	17
【붙임2】 시범사업 운영 계획서	18
【붙임3】 의료기관윤리위원회 구성현황 및 운영계획	22
【붙임4】 법정서식	23

I

연명의료결정법 추진현황

① 추진배경

- 보라매병원 사건('97), 김할머니 사건('08)으로 연명의료 결정에 대한 사회적 관심 증폭
 - (보라매병원사건) 인공호흡기로 연명하던 환자를 가족 요청에 따라 퇴원 조치한 의료인에게 살인 방조죄로 유죄판결
 - (김할머니사건*) 지속적식물인간 상태로 연명하는 환자에 대한 가족들의 연명치료 중지 요청(병원측은 거부)을 대법원이 인용
 - * 연명치료중단을 인정한 최초 국내 판결로 사회적 논의 촉발
- 연명의료 결정 법제화 필요성에 대한 국민적 요구 증대
 - 생명나눔 국민인식도 조사('11, 보건복지부)
 - 무의미한 연명치료 중지에 대한 태도 : 72.3% 찬성
 - 무의미한 연명치료중단의 합리적 제도화 방안 연구('13, 보건복지부)
 - 무의미한 연명치료에 관한 법률 필요 여부 환자 설문 : 92% 필요
 - 보건복지부 노인실태조사('14,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연명치료에 대한 인식 : 88.9% 반대(매우반대 52.2%), 4.9% 찬성
- 연명치료 중단 제도화를 위한 사회적협의체* 논의('09.12~'10.6)
 - 무의미한 연명의료 중단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확인했으나, 환자의사 대리 결정, 입법화 등에 대해서는 이견 있었음
 - * 종교계·의료계·법조계·시민단체·입법부 추천 위원 18명(위원장: 신언향 복지부 前차관)
-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이하 “국생위”)에서 특별위원회**를 운영('12.12~'13.5)하여 공청회('13.5)를 거친 후 특별법 제정 권고('13.7)
 - * 생명윤리법에 따라 생명윤리·안전에 관한 정책을 심의하기 위해 '05년 4월 설치된 대통령 소속 자문기구
 - ** 의료계·종교계·윤리계·시민단체 등 위원 11인(위원장: 이윤성 서울대 의대 교수)으로 구성

② 입법 추진경과

- 김재원 의원, 「**호스피스·완화의료의 이용 및 임종과정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안**」 발의('15.7.7), 상정('15.11.9)
 - ※ 호스피스·완화의료 활성화 없는 연명의료결정 제도화에 대한 종교계 등의 반대 의견을 고려해 호스피스·완화의료 이용 및 지원에 대한 내용 포함하여 발의
 - ※ 호스피스·완화의료에 관한 법률안(김세연 의원), 암관리법 전부개정안(김춘진 의원) 등과 함께 상정, 소위 회부
- 국회의결을 거쳐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안**」(이하 “연명의료결정법”) 제정·공포('16.2.3)
 - ※ 호스피스('17.8월 시행), 연명의료('18.2월 시행)
- 「연명의료결정법」 후속조치 **민관추진단** 및 **분과위원회** 중심 **하위법령 제정(안) 마련('16.4월~)** 및 **입법예고('17.3.23~5.4)**
- 하위법령(안) **입법예고('17.3.23~5.4.)** 및 **공청회 개최(3.31.)**
- 서울대병원 및 국립암센터 내 **연명의료 시뮬레이션** 진행('17.4.17./25.)
- 입법예고 의견 및 영향평가 결과를 반영, **하위법령(안) 수정('17.6.8.)**
- 하위법령(안)에 대한 국조실(규제개혁위원회) **규제심사 완료('17.6.26.)**
- 하위법령(안) 법제처 **심사 의뢰('17.6.27.)**
- 시행령 제정·공포('17.7.24.), 시행규칙 제정·공포('17.8.4.)

③ 연명의료결정법 주요내용

< 용어의 정의 >

- (**연명의료**)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게 하는 심폐소생술, 인공호흡기 착용, 혈액투석 및 항암제 투여의 의학적 시술로서 치료효과 없이 임종과정만을 연장하는 것
 -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 회복 가능성이 없고, 치료에도 불구하고 회복되지 않으며, 급속도로 증상이 악화되어 담당의사와 전문의 1인으로부터 사망에 임박한 상태에 있다고 판단을 받은 환자
- (**호스피스·완화의료**) 말기환자 또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와 그 가족에게 통증과 증상의 완화 등을 포함하여 신체적, 심리사회적, 영적 영역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와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의료
 - (**말기환자**) 암, AIDS 등의 질병에 걸린 후 적극적 치료에도 근원적인 회복 가능성이 없고, 점차 증상이 악화되어 담당의사와 전문의 1인으로부터 수개월 이내에 사망할 것으로 예상되는 진단을 받은 환자
 - ※ 대상질환 : 암, 후천성면역결핍증, 만성 폐쇄성 호흡기질환, 만성간경화

< 호스피스·완화의료 이용 대상 및 절차 >

- (**대상**) 암, 후천성면역결핍증, 만성 폐쇄성 호흡기질환, 만성간경화를 앓고 있는 말기환자와 임종기환자 중 본인이 희망하는 사람
- (**절차**) 이용 동의서 및 의사소견서를 전문기관에 신청

< 연명의료중단 등의 결정, 이행, 보고 >

- (**연명의료중단등 결정**)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의사 또는 환자가족 전원의 합의에 따라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하는 결정

○ (연명의료중단등 결정에 관한 환자 의사 확인 방법)

환자 의사	확인 방법
환자의 의사 능력이 있을 때	· 연명의료계획서(말기·임종기 환자 작성 가능) · 사전연명의료의향서(원하는 사람 작성가능) + 담당의사의 확인
환자의 의사 능력이 없을 때	· 사전연명의료의향서 + 의사 2인의 확인 · 가족 2인 이상의 일치하는 진술 + 의사 2인의 확인 * 가족 : ①배우자 ②직계 존·비속 ③ 형제자매(①②없는 경우) * 환자 가족이 1인뿐인 경우, 1인의 진술로도 가능
환자의 의사를 확인할 수 없고, 의사표현 할 수 없는 상태일 때	· 미성년자의 경우, 친권자인 법정대리인의 결정 + 의사 2인의 확인 · <u>환자가족 전원의 합의*</u> + 의사 2인의 확인 * 행방불명자 등 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자 제외

- (이행 결과의 보고) 의료기관의 장은 연명의료중단등 결정 이행 결과를 보건복지부에 보고하여야 함

< 관리체계 >

- 국가연명의료호스피스위원회 설치(위원장 : 보건복지부차관)
 - 호스피스와 연명의료에 관한 종합계획(5년), 시행계획(매년) 수립
- (연명의료)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국가생명윤리정책연구원), 의료기관 윤리위원회,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 (호스피스) 중앙 호스피스센터(국립암센터), 권역별 호스피스센터, 호스피스 전문기관

④ 향후 추진계획

< 조직·시스템 구축 >

- (공통) 국가호스피스연명의료위원회 구성·운영(9월~)
- (호스피스) 호스피스전문기관 지정 및 평가기준 정비(~9월), 권역별 호스피스센터 지정('18년)
- (연명의료) 연명의료계획서 등록시스템 구축,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지정, 의료기관윤리위원회 설치·운영(~'18.2월)

< 종합계획·매뉴얼 마련 및 교육·홍보 추진 >

- (공통) 호스피스연명의료종합계획 수립 연구용역(7월~12월), 의사·간호사·사회복지사 등 현장종사자들에 대한 교육·홍보(10월~)
- (호스피스) 유형별(입원형·자문형·가정형) 모형·수가·사업지침 개발(~9월)
- (연명의료) 중단 절차·기준 등 가이드라인, 기관별 매뉴얼 개발(~10월),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및 연명의료계획서 작성 시범사업 추진(10월~)

① 추진배경

- 「연명의료결정법」 中 연명의료 분야 신규 시행(18년 2월) 예정
- 연명의료 관련 및 시범사업 실시를 통해 임상현장의 이해도와 수용성을 제고함으로써 연명의료결정 제도의 안정적 정착 지원 필요
- ⇒ 사전연명의료의향서의 작성·상담·등록, 연명의료계획서의 작성 및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의 이행과 관련한 시범사업 추진

② 사업1: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상담·등록

< 사업 개요 >

- **(신청자격)** 연명의료결정법 제11조 및 시행령 제7조에 따른 기관
 - (형태) 지역보건의료기관, 의료기관, 비영리법인(단체), 공공기관
 - (시설) 해당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사무실 및 상담실
 - (인력) 소관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1개 이상의 전담 부서와 2인 이상의 인력을 갖추는 것
- * 연명의료계획서 작성 및 이행 시범사업과 중복 신청 가능
- **(기간)** 2017년 10월 16일 ~ 2018년 1월 15일(3개월)
 - * 사업추진 상황에 따라 시범기간 변동 가능
- **(예산)** 각 기관별 1,000만원 이내
- **(주요내용)**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상담·작성·등록 절차 시범운영

< 세부 내용 >

○ 사업 수행 기관 내 사업 책임자 및 상담자 배정

- 기관 소속 인력 중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설립추진단(이하 '추진단')과 시범사업 관련 협의 및 시행 업무를 총괄할 사업 책임자 지정
- 기관 소속 인력 중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지원 및 상담, 등록 등의 업무를 담당할 상담자 지정

○ 연명의료결정 관련 교육 참여

- 사업 책임자 및 상담자는 추진단에서 제공하는 교육에 반드시 참여
- 사업 책임자는 추진단에서 추가적인 교육 제공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기관 내 종사자를 대상으로 자체 교육 수행

○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및 상담

-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을 희망하는 19세 이상인 사람에 대하여 사전연명의료의향서의 작성과 관련된 사항을 설명하고 상담 실시

1. 연명의료의 시행방법 및 연명의료중단등 결정에 대한 사항
2. 호스피스의 선택 및 이용에 관한 사항
3. 사전연명의료의향서의 효력 및 효력 상실에 관한 사항
4. 사전연명의료의향서의 작성·등록·보관에 관한 사항
5. 사전연명의료의향서의 변경·철회 및 그에 따른 조치에 관한 사항
6. 법 제12조제6항 및 제13조제3항에 따른 기록의 이관에 관한 사항

- 시범사업으로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한다는 사실과 향후 처리절차 등에 관하여 충분히 설명
- 작성자가 사전연명의료의향서의 작성 및 등록(추진단 통보 포함)을 희망하는 경우, 상담자는 작성자의 인적사항과 해당 내용을 이해하였음을 확인하여 서식(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작성
- 작성 내용을 확인하고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 및 보관

-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및 상담의 과정과 결과를 기록하고 작성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사본 1부를 추진단에 즉시 통보
 - ※ 시범사업 중 작성된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연명의료중단등결정 이행 근거가 되는 유효한 문서로서 법 시행 이후 관리기관이 구축하는 정보시스템에 우선 등록
 - ※ 기타 시범사업에 참여하지 않은 기관에서 법 시행 전 작성된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법정서식을 차용하였더라도 유효하지 않음
- 작성 및 등록 후 작성자가 그 내용의 변경 및 철회 등을 요구하는 경우 이에 응하고 그 처리 결과를 추진단에 즉시 통보

○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관련 홍보

- 연명의료결정법과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등 연명의료결정의 제도화에 대한 대국민 홍보 실시
- 관련 결과를 기록하여 추진단에 보고

③ 사업2: 연명의료계획서 작성 및 이행

< 사업 개요 >

- **(신청자격)** 상급종합병원과 국공립 종합병원 중 법 제14조에 따른 의료기관윤리위원회 및 이를 지원하는 전담기구(인력)이 있는 기관
 - 단, 이 경우 전담인력은 기관에 소속된 상근인력이어야 함
 - * 소재 지역, 기관 내 진료 분야 및 의료인 구성 등을 고려하여 선정 예정
 - *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상담·등록 시범사업과 중복 신청 가능
- **(예산)** 각 기관별 2,000만원 이내
- **(기간)** 2017년 10월 16일 ~ 2018년 1월 15일(3개월)
 - * 사업추진 상황에 따라 시범기간 변동 가능
- **(주요내용)** 임종 과정 판단, 연명의료계획서 작성, 연명의료에 관한 환자(또는 가족) 의사 확인,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의 이행 절차 시범 운영

< 세부 내용 >

○ 사업 수행 기관 내 사업 책임자 및 담당자 배정

- 기관 소속 의사 중 추진단과 시범사업 운영에 관한 업무를 협의하고 시행 업무를 총괄할 사업 책임자 지정
- 기관 소속 인력 중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의 등록 및 이행통보 전담 인력과 의료기관윤리위원회를 지원할 전담인력 지정(겸직 가능)

○ 의료기관윤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 법 제14조 및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의료기관윤리위원회 구성

1.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
2. 해당 의료기관 소속 인력 외에 의료인이 아닌 사람으로서 종교계·법조계·윤리계·시민단체 등의 추천을 받은 사람 2명 이상을 포함
3. 윤리위원회 위원은 임기를 2년으로 하여 해당의료기관의 장이 위촉
4. 윤리위원회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

- 법 제14조제2항 및 시행규칙 제9조제3항에 따른 업무 수행

1. 연명의료중단등결정 및 그 이행에 관하여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와 그 환자가족 또는 의료인이 요청한 사항에 관한 심의
2. 제19조제3항에 따른 담당의사의 교체에 관한 심의
3. 환자와 환자가족에 대한 연명의료중단등 결정 관련 상담
4. 해당 의료기관의 의료인에 대한 의료윤리 교육
5. 연명의료중단등결정 및 그 이행에 관한 통계 분석
6. 연명의료중단등결정 및 그 이행에 관한 평가 및 개선방안 마련
7. 그 밖에 연명의료중단등결정과 그 이행의 적절한 운영을 위하여 보건 복지부 장관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의료기관윤리위원회의 활동 및 심의 내용 기록

○ 연명의료결정 관련 교육 참여 및 시행

- 사업 책임자 및 담당자는 추진단에서 제공하는 교육에 참여하고 추진단의 업무에 협조하여야 함
- 사업 책임자는 추진단에서 제공하는 교육이 있는 경우 기관 내 홍보 및 참여를 독려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기관 내 상담자 및 종사자를 대상으로 자체 교육을 수행하여야 함

○ 연명의료계획서 작성 등 연명의료결정 제도 안내

- 연명의료결정법과 연명의료계획서 작성 및 그 이행 등에 대하여 환자 및 환자가족에게 안내하고 적절한 상담 제공
- 소개 자료 및 안내 대상 및 방법, 그 결과 등을 추진단에 보고

○ 말기 환자 판단 및 기록

- 말기 환자가 연명의료계획서 작성을 희망하는 경우, 담당의사는 시행규칙 2조에 따른 종합적 고려를 바탕으로 환자가 말기환자인지 여부에 대한 의사소견서를 작성 및 기록(별도 양식 없음)

○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 판단 및 기록

- 연명의료계획서 작성이나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을 원하는 환자(환자가족)가 있는 경우, 담당의사와 해당분야의 전문의는 환자가 임종과정*에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고 그 결과를 기록(별지 제9호서식)

* 회생의 가능성이 없고, 치료에도 불구하고 회복되지 아니하며, 급속도로 증상이 악화되어 사망에 임박한 상태

- 이 때 환자의 임종과정 판단을 위한 해당 분야의 전문의는 사업 책임자가 해당 의료기관의 장과 상의하여 배정

○ 연명의료계획서 작성 및 통보

- 담당의사는 말기환자 또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게 연명의료중단등결정, 연명의료계획서 및 호스피스에 관한 정보 제공
- 담당의사는 말기환자 또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요청에 따라 연명의료계획서를 작성하되, 연명의료 관련 사항을 충분히 설명

1. 환자의 질병 상태와 치료방법에 관한 사항
2. 연명의료의 시행방법 및 연명의료중단등 결정에 관한 사항
3. 호스피스의 선택 및 이용에 관한 사항
4. 연명의료계획서의 작성·등록·보관 및 통보에 관한 사항
5. 연명의료계획서의 변경·철회 및 그에 따른 조치에 관한 사항
6.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의료기관윤리위원회의 이용에 관한 사항

- 시범사업으로 연명의료계획서를 작성한다는 사실과 향후 처리 절차 등에 관하여 충분히 설명
- 담당의사 및 환자는 환자의 인적사항과 설명내용을 이해하였음을 확인하여 서식(별지 제1호서식)을 작성하고 등록 및 보관
- 연명의료계획서 작성 및 상담 결과를 기록하고 작성된 연명의료계획서 사본 1부를 추진단에 통보

※ 시범사업 중 작성된 연명의료계획서는 연명의료중단등결정 이행 근거가 되는 유효한 문서로서 법 시행 이후 관리기관이 구축하는 정보시스템에 우선 등록

※ 기타 시범사업에 참여하지 않은 기관에서 법 시행 전 작성된 연명의료계획서는 법정서식을 차용하였더라도 유효하지 않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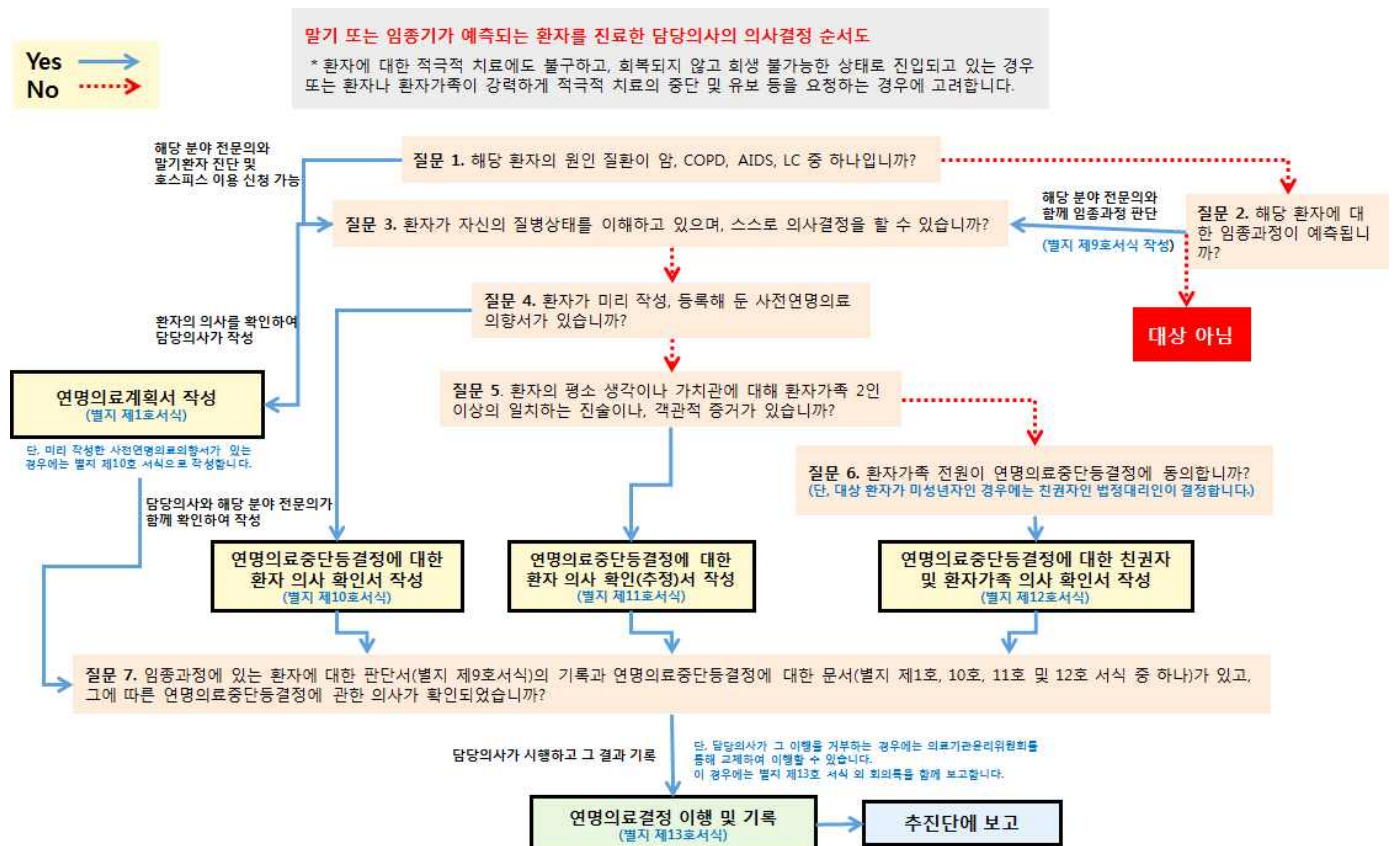
- 작성 및 등록 후 작성자가 그 내용의 변경 및 철회 등을 요구하는 경우 이에 응하고 그 처리 결과를 추진단에 즉시 통보

○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의 확인 및 기록

- 시범사업 기간 중 작성된 사전연명의료의향서가 있는 경우, 담당 의사(환자의 의사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담당의사와 해당분야의 전문의)는 환자의사 확인 내용을 기록(별지 제10호서식)하여야 함
- 환자의 의사능력은 없으나, 이전에 환자가 개인적으로 작성한 사전연명의료의향서에 준하는 문서가 있거나, 환자가족 2인이 동일한 진술을 통해 연명의료중단등결정에 대한 환자 의사를 추정할 수 있는 경우 담당의사와 해당 분야 전문의는 그 내용을 확인하여 기록(별지 제11호서식) 하여야 함
- 환자의 의사능력이 없고 환자의 의사를 추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환자가족 전원(환자가 미성년자인 경우는 친권자인 법정대리인)이 연명의료중단등결정에 동의한 경우에만 담당의사와 해당 분야 전문의는 그 내용을 확인하여 기록(별지 제12호서식) 하여야 함

○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의 이행 및 통보

- 시범사업 기간 중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로 판단되고, 환자 본인의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을 확인한 경우(법 제17조) 담당의사는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의 이행 가능
 - ※ 환자가족 전원의 결정에 따른 연명의료중단결정의 이행은 법 시행 이전에는 위법의 소지가 있어 시범사업의 범위에서 제외, 다만 유보결정의 이행은 가능
- 사업 담당자는 이행결과를 기록(별지 제13호서식)하여 추진단에 통보



④ 공통 행정사항

○ 사업 관리

- 시범사업 기간 내 추진단과 긴밀하게 협조하고 시범사업을 성실히 수행하며, 연명의료결정법의 바람직한 적용 및 정착을 위해 노력
- 추진단에 제출된 사업계획서에의 범위 내에서 수행하고, 제출된 사업계획서의 내용(인력 및 사업 내용 등)의 변경이 요구되는 경우 추진단과 사전에 협의 필요
- 사업 책임자는 관련 회의, 연명의료 정보시스템 구축 관련 자문 요청, 시범사업 수행 관련 정보 제공에 성실히 협조
- 기타 사전에 명시하지 않았으나 시범사업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이 있을 경우, 추진단의 요청에 응답

○ 사업비

- 전담인력 인건비, 교육비 및 사업 수행 경비 등에 지출할 수 있으나 사전에 사업계획서에 제출되어 승인된 범위 내에서 사용
- 집행 내역은 기록 및 보관하고 사업 결과보고 시 정산근거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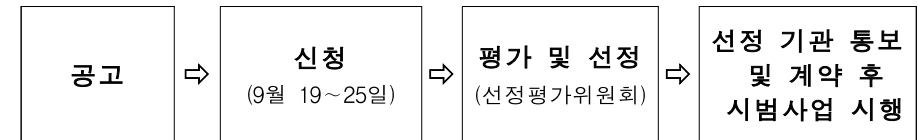
○ 결과의 보고

- 시범사업 기간 내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및 상담 및 연명의료 계획서 작성 및 상담에 대한 결과는 월 1회 이상 보고
- 해당 기관에서 수행된 시범사업의 추진 내용과 결과를 기록하고, 최종 사업 결과는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추진단에 제출
 - ※ 보고 서식 추후제공

II

연명의료결정법 시범사업 기관 선정 계획

① 추진절차



② 제출서류 및 제출방법

○ 제출서류

- 시범사업 수행기관 참여 신청서(붙임1)
- 시범사업 운영계획서(붙임2)
 - ※ 사업1과 사업2에 동시에 참여하고자 하는 기관은 각 사업별 계획서 별도 제출
- 시범사업 신청가능 기관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별도서식 없음)
- 의료기관 윤리위원회 구성 현황 및 운영계획(붙임3, 사업2만 작성)

○ 제출방법 : 이메일(s02cjj@naver.com) 또는 직접 제출

◇ 제출처 : 국가생명윤리정책연구원(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설립추진단)

- 주소 : (우편번호 04522) 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로 113 동부다동빌딩 4층
국가생명윤리정책연구원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설립추진단 시범사업 담당자 앞

※ 제출 관련 문의 : 국가생명윤리정책연구원 최정임(02-737-8332)

[illegible]

【붙임2】 시범사업 운영 계획서

시범사업 운영 계획서

1. 시범사업 참여 목적

2. 시범사업 수행 내용 및 방법

- 안내된 시범사업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
- 사업1은 연명의료결정법 및 시범사업 관련 안내,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관련 홍보 계획, 상담자 훈련 및 교육 계획에 대한 기관 내 운영 및 관리 계획 반드시 포함
- 사업 2는 연명의료결정법 및 시범사업 관련 안내, 의료기관 내 종사자 대상 교육 및 홍보 계획,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 판단과 연명의료계획서 작성 및 연명의료중단 등결정 확인 및 관리 방안을 반드시 포함

3. 추진 체계

- 수행기관 내 추진 체계 기술(도표로 조직도 등 제시 가능)

4. 사업수행인력

구분	성명	소속기관 및 부서	직위	전공 및 학위	담당 업무	해당사업 수행기간 (개월)	상근/ 비상근	인건비 수령여부
책임자								
담당자								

- ※ 사업수행 인력은 구분란에 해당사업에 참여하는 기존인력과 해당사업을 위한 신규인력, 자문인력을 구분하여 표시
- ※ 사업책임자 : 반드시 해당 기관 소속 종사자여야 하며, 사업 2의 경우는 연명의료관련 임상을 담당하는 의사여야 함
- ※ 사업 담당자 : 사업 1의 경우 기관 내 상근자를 신청서의 사업담당자로 작성

5. 기대효과 및 성과 확산 계획

- ※ 사업결과를 통해 얻을 수 있는 효과를 구체적으로 제시
- ※ 시범사업이 종결된 이후 사업유지 방법 및 전망을 기술하고, 사업의 결과를 확산 (예, 홍보)시키기 위한 전략 등을 기술

6. 세부 추진 일정 및 계획

- 사업 수행 계획에 포함된 내용에 대한 월별 추진 일정 및 예산집행 계획 등 기술

사 업 내 용	월 별				비고
	' 17. 10	11	12	' 18. 1	
예산집행 계획(%)					

7. 사업예산

(1) 예산 비목별 산출내역

비 목 명	산출내역	금액 (천원)	비율(%)	
			구분	전체
인건비				
여비				
회의비				
수용비 및 수수료				
교육훈련비				
임차료				
프로그램 운영비				
(필요시 항목 추가 작성)				
총 계				100

(2) 세부사업별 산출내역

구분	사업내역	산출내역	금액 (천원)	비율(%)	
				구분	전체
1.세부 사업	예) 00교육				
	00홍보				
	00모니터링				
	총 계			100	

※ 세부예산 작성 시 참고사항

○ 가급적 본 서식에 맞게 사업비를 책정하도록 하며, 비목별 산정기준은 다음과 같음. 사업에 따라 비목을 제외하거나 추가할 수 있음.

구 분	산 정 기 준
인건비	□ 기존인력 인건비 : 사업수행기관에 사업 선정 이전부터 소속되어 있던 인력에 대한 인건비 □ 신규인력 인건비 : 선정된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신규로 채용한 인력에 대한 인건비
여비	□ 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국내외 출장비, 현지교통비 등
회의비	□ 사업수행에 필요한 국내외 전문가 초청 자료료, 세미나 개최, 평가 및 자문회의비 등
임차료	□ 임차에 관한 경비 및 부대경비
업무추진비	□ 사업수행에 필요한 국내외 전문가 초청 자료료, 세미나 개최, 평가 및 자문회의비 등
수용비 및 수수료	□ 사업수행에 관련된 인쇄, 복사, 슬라이드 제작, 현상,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보험금, 각종수수료, 사무용품 등
프로그램 운영비	□사업에 필요한 프로그램 및 관련 자료 등에 대한 개발, 운영비용

- 각 항목은 **사업수행기관의 예산집행지침에 따름.**
- 사업비 산출기준
 - 각 비목별 사업비 계상(합산) 시 1,000원 미만은 절사
 - 비목별로 산출근거를 명확하게 제시하며, 필요 시 표 하단에 상술 가능
 - ‘1. 자체수행경비’는 총 사업비 중에서 사업수행기관에서 직접 집행하는 사업비에 대하여 위의 표의 산정기준에 따라 작성
 - 사업비 내에 세부사업이 있는 경우에는 총괄표와 세부사업별 세부 산출내역을 별도로 작성
 - 위탁사업의 비목은 위탁내역에 따라 변경가능
 - 용역사업이 있는 경우 사업비의 비율은 자체수행경비와 용역비를 각각 100으로 하였을 때의 비율과 전체 사업비에 대한 비율을 제시

8. 수행 기관 현황 정보

< 공통 >

- 수행기관 연혁, 주요활동내역, 조직도 등 작성

< 사업1 >

- 수행기관에 대한 정보와 해당 업무를 담당할 전용 사무공간(사업담당자가 상주하는 곳) 및 상담실, 온라인 업무처리시스템(PC, 인터넷망 등)을 갖추고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사진, 위치, 면적 등)를 첨부하여 제출

< 사업2 >

구 분	현 황
의료기관 중별 구분	① 상급종합병원 ② 국·공립종합병원
병상현황	① 허가/일반병상수(/)병상
	② 가동병상수()병상(일반병상 기준)
	③ 중환자실 병상수()
	④ 가동 병동수()
설립유형	☐ 국립 ☐ 시·공립 ☐ 지방공사 ☐ 학교법인 ☐ 특수법인 ☐ 사단법인 ☐ 재단법인 ☐ 사회복지법인 ☐ 의료법인 ☐ 개인 ☐ 기타()
개설 진료과목	총 과목 (개설허가서를 토대로 기재)
진료과목 개설현황	☐ 내과 ☐ 소아청소년과 ☐ 신경과 ☐ 정신과 ☐ 피부과 ☐ 외과 ☐ 흉부외과 ☐ 정형외과 ☐ 신경외과 ☐ 성형외과 ☐ 산부인과 ☐ 안과 ☐ 이비인후과 ☐ 비뇨기과 ☐ 재활의학과 ☐ 가정의학과 ☐ 치과 ☐ 응급의학과 ☐ 마취통증의학과 ☐ 방사선종양학과 ☐ 영상의학과 ☐ 진단검사의학과 ☐ 병리과 ☐ 결핵과 ☐ 핵의학과 ☐ 한방과 ☐ 건강관리과 ☐ 기타
의료기관 인증 여부	① 있음 (☐ 인증 / ☐ 조건부인증 / ☐ 불인증) ② 없음

【붙임3】의료기관윤리위원회 구성 현황 및 운영계획

1. 의료기관윤리위원회 위원 명단

연번	성명	성별	생년월일	소속	직위	전문분야	비고
1	홍길동	남	1967. 1. 1.	한국대학교의과대학	교수	응급의학	위원장
2	홍길순	여			변호사	형법	

2. 운영계획

- 연명의료중단등결정 및 그 이행과 관련된 윤리위원회 활동 계획, 예산 현황 및 운용계획 등을 기술
- 위원회 운영 지침이나 규정이 있는 경우 첨부

【붙임4】법정서식

1. 사업 1 사용 서식

- [별지 제6호서식] 사전연명의료의향서

2. 사업 2 사용 서식

- [별지 제1호서식] 연명의료계획서
- [별지 제9호서식]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 판단서
- [별지 제10호서식] 연명의료중단등결정에 대한 환자의사 확인서(사전연명의료의향서)
- [별지 제11호서식] 연명의료중단등결정에 대한 환자의사 확인서(환자가족 진술)
- [별지 제12호서식] 연명의료중단등결정에 대한 친권자 및 환자가족 의사 확인서
- [별지 제13호서식] 연명의료중단등결정 이행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 색상이 어두운 부분은 작성하지 않으며,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시를 합니다.

등록번호	※ 등록번호는 등 록기관에서 부여합니다.		
작성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연명의료 중단등결정 (항목별로 선택합니다)	[] 심폐소생술		[] 인공호흡기 착용
	[] 혈액투석		[] 항암제 투여
호스피스의 이용 계획	[] 이용 의향이 있음 [] 이용 의향이 없음		
사전연명의료 의향서 등록기관의 설명사항 확인	설명 사항	[] 연명의료의 시행방법 및 연명의료중단등결정에 대한 사항	
		[] 호스피스의 선택 및 이용에 관한 사항	
		[] 사전연명의료의향서의 효력 및 효력 상실에 관한 사항	
		[] 사전연명의료의향서의 작성·등록·보관 및 통보에 관한 사항	
		[] 사전연명의료의향서의 변경·철회 및 그에 따른 조치에 관한 사항	
		[] 등 록기관의 폐업·휴업 및 지정 취소에 따른 기록의 이관에 관한 사항	
	확인	년 월 일	성명 (서명 또는 인)
환자 사망 전 열람허용 여부	[] 열람 가능 [] 열람 거부 [] 그 밖의 의견		
사전연명의료 의향서 보관방법			
사전연명의료 의향서 등록기관 및 상담자	기관 명칭	소재지	
	상담자 성명	전화번호	

본인은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의 환자에 대한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은 내용을 직접 작성하였습니다.

작성일	년 월 일
작성자	(서명 또는 인)
등록일	년 월 일
등록자	(서명 또는 인)

유의사항

- 사전연명의료의향서란「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19세 이상인 사람이 자신의 연명의료중단등결정 및 호스피스에 관한 의사를 직접 문서로 작성한 것을 말합니다.
-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하고자 하는 사람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을 통하여 직접 작성하여야 합니다.
-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한 사람은 언제든지 그 의사를 변경하거나 철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등록기관의 장은 지체없이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변경하거나 등록을 말소하여야 합니다.
-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① 본인이 직접 작성하지 아니한 경우, ② 본인의 자발적 의사에 따라 작성되지 아니한 경우, ③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으로부터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제12조제2항에 따른 설명이 제공되지 아니하거나 작성자의 확인을 받지 아니한 경우, ④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등록 후에 연명의료계획서가 다시 작성된 경우에는 효력을 잃습니다.
- 사전연명의료의향서에 기록된 연명의료중단등결정에 대한 작성자의 의사는 향후 작성자를 진료하게 될 담당의사와 해당 분야의 전문의 1인이 동일하게 작성자를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라고 판단한 경우에만 이행될 수 있습니다.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 판단서

※ 색상이 어두운 부분은 작성하지 않습니다.

등록번호	※ 등록번호는 의료기관에서 부여합니다.		
환자	성명	생년월일	
	진단명		
담당의사	성명	면허번호	
	소속 의료기관		
	판단 내용		
	판단일시		
전문의	성명	전문과목	전문의 자격 인정번호
	소속 의료기관		
	판단 내용		
	판단일시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위와 같이 환자가 임종과정에 있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결과를 기록합니다.

	년	월	일
담당의사 :	(서명 또는 인)		

연명의료중단등결정에 대한 환자의사
확인서(사전연명의료의향서)

※ 색상이 어두운 부분은 작성하지 않으며,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시를 합니다.

등록번호	※ 등록번호는 의료기관에서 부여합니다.		
환자	성 명	생년월일	

[] 환자가 의사능력이 있는 경우

사전연명의료의향서	[] 등록된 의향서 있음	
	조회 일자	등록번호

위 환자에 대하여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의 환자에 대한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제17조
에 따라 조회된 사전연명의료의향서의 내용을 환자 본인에게 확인하였습니다.

	년	월	일
담당의사	성명	소속 의료기관	(서명 또는 인)
	면허번호		

[] 환자가 의사능력이 없는 경우

사전연명의료의향서	[] 등록된 의향서 있음	
	조회 일자	등록번호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의 환자에 대한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해당 환
자가 사전연명의료의향서의 내용을 확인하기에 충분한 의사능력이 없다는 의학적 판단 하에 조회된 사전
연명의료의향서가 같은 법 제2조제4호의 범위에서 같은 법 제12조에 따라 작성되었다는 사실을 확인
하였습니다.

	년	월	일
담당의사	성명	소속 의료기관	(서명 또는 인)
	면허번호		
해당 분야의 전문의	성명	소속 의료기관	(서명 또는 인)
	전문과목	전문의 자격 인정번호	

■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별지 제11호서식]

연명의료중단등결정에 대한 환자의사 확인서(환자가족 진술)

※ 색상이 어두운 부분은 작성하지 않으며,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시를 합니다.

등록번호	※ 등록번호는 의료기관에서 부여합니다.	
환자	성 명	생년월일
연명의료 중단등 결정 (항목별로 선택합니다)	[] 심폐소생술	[] 인공호흡기 착용
	[] 혈액투석	[] 항암제 투여
환자가족	총 명	※ 19세 이상인 사람만 해당합니다.
진술 내용	환자가족 성명	진술 내용
	필요시 칸 추가	

위 환자의 환자가족으로서 환자가 연명의료중단등결정에 관한 의사로 보기에 충분한 기간 동안 연명의료중단등에 관한 의사를 일관하여 표시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위와 같이 진술합니다.

연번	환자가족 성명	환자와의 관계	생년월일	연락처	서명란
1					(서명 또는 인)
2					(서명 또는 인)
3					(서명 또는 인)
4	필요시 칸 추가				(서명 또는 인)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의 환자에 대한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제3호에 따라 환자가족이 위와 같이 진술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담당의사	성명	소속 의료기관	(서명 또는 인)
	면허번호		
해당 분야의 전문의	성명	소속 의료기관	
	전문과목	전문의 자격 인정번호	(서명 또는 인)
유의사항			
1. 19세 이상의 환자가 의사를 표현할 수 없는 의학적 상태인 경우에만 작성할 수 있습니다.			
2. 환자의 연명의료중단등결정에 관한 의사로 보기에 충분한 기간 동안 일관하여 표시된 환자의 의사에 대하여 환자가족 2명 이상의 일치하는 진술(환자가족이 1명인 경우 해당 1명의 진술을 말합니다)을 하여야 합니다.			
3. 환자가족은 19세 이상인 자로서 ①배우자, ②직계비속, ③직계존속, ④형제자매(①~③에 해당하는 사람이 없는 경우만 해당합니다)를 말합니다.			
4. 환자가족의 진술과 배치되는 내용의 다른 환자가족의 진술 또는 객관적인 증거가 있는 경우에는 작성할 수 없습니다.			
5. 담당의사와 해당분야의 전문의가 환자의 의사를 확인하는 경우에는 해당 환자의 가족관계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별지 제12호서식]

연명의료중단등결정에 대한 친권자 및 환자가족 의사 확인서

※ 색상이 어두운 부분은 작성하지 않으며,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시를 합니다.

등록번호	※ 등록번호는 의료기관에서 부여합니다.	
환자	성 명	생년월일
연명의료 중단등 결정 (항목별로 선택합니다)	[] 심폐소생술	[] 인공호흡기 착용
	[] 혈액투석	[] 항암제 투여

[] 환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위 환자의 법정대리인(친권자)으로서 환자의 연명의료중단등결정에 대하여 위와 같이 의사를 표시합니다.

연번	친권자 성명	환자와의 관계	생년월일	연락처	서명란
1					(서명 또는 인)
2					(서명 또는 인)

[] 환자가족 전원의 의견이 필요한 경우

위 환자의 환자가족으로서 환자의 연명의료중단등결정에 대하여 환자가족 전원의 합의로 위와 같이 의사를 표시합니다.

연번	환자가족 성명	환자와의 관계	생년월일	연락처	서명란
1					(서명 또는 인)
2					(서명 또는 인)
3					(서명 또는 인)
4	필요시 칸 추가				(서명 또는 인)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의 환자에 대한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에 따라 환자의 의사를 확인할 수 없고, 해당 환자가 의사표현을 할 수 없는 의학적 상태에 해당하여 미성년자인 환자의 법정대리인(친권자) 또는 환자가족이 위와 같은 의사표시를 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담당의사	성명	소속 의료기관	(서명 또는 인)
	면허번호		
해당 분야의 전문의	성명	소속 의료기관	
	전문과목	전문의 자격 인정번호	(서명 또는 인)
유의사항			
1. 경찰관서에 행방불명 사실이 신고된 날부터 3년 이상 경과한 사람, 실종선고를 받은 사람, 의식불명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로 자신의 의사를 표명할 수 없다고 의학적으로 판단을 받은 사람은 환자가족에서 제외됩니다.			
2. 담당의사 또는 해당분야의 전문의가 환자의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을 확인하는 경우에는 해당 환자의 가족관계 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3. 담당의사 또는 해당분야의 전문의 1명이 환자가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을 원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는 작성할 수 없습니다.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MEMO